

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 공모지침서 변경사항 (2018.11.12.)

연번	조항	페이지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M	제7조 (사업신청 등)	p4	③ 1. 사업신청자별로 토지매입가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5건 , 임대료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2건까지 의뢰할 수 있다.	③ 1. 사업신청자별로 토지매입가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10건 , 임대료에 대한 탁상감정평가는 최대 2건까지 의뢰할 수 있다.	토지매입가 탁감 가능 건수 변경 5건 → 10건
N	제7조 (사업신청 등)	p4	⑦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입상한금액 또는 토지주 요구 금액과 정식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이 5% 미만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지분참여 없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등 리츠와 민간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대상지의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 여부의 판단은 리츠의 이사회, 주총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.	⑦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매입상한금액 또는 토지주 요구 금액과 정식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이 10% 미만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지분참여 없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등 리츠와 민간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대상지의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 여부의 판단은 리츠의 이사회, 주총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.	감평가 및 매입상한가 대비 차액 비율 변경 5% → 10%
O	별첨9 입지적정성 평가표	별첨	미제공	별첨자료로 제공	미제공되었던 입지적정성평가표 제공